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호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98
----------	------

발의년월일 : 2020년 2월 5일

발 의 자 : 이호대, 유 용, 김경우,
김정태, 김제리, 이현찬,
이준형, 권영희, 이광호,
채인묵 의원(10명)

1. 제안이유

기금의 존속기한(2018년 12월 31일) 종료예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기반시설 취약지역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4조).

나.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정비함(안 제8조 및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18년 12월 31일까지</u>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3년 12월 31일까지</u>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8조(기금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u>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u>」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p>	<p>제8조(기금관리) ① ----- ----- ----- ----- ----- ----- ----- 「<u>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u>」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 -----.</p>
<p>제14조(준용)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u>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u>」에 따른다. ②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u>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u>」을 준용한다.</p>	<p>제14조(준용)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u>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u>」에 따른다. ②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u>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u>」을 준용한다.</p>